

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5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'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'는 대형마트, SSM 등의 골목상권 무분별한 진입에 따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동네 슈퍼마켓을 보호할 목적으로 '13년 2월 개장하여 민간위탁으로 관리·운영하고 있음
- 나. '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'는 지난 7년 동안 749억 원의 매출을 통해 골목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, 최근 슈퍼마켓의 급격한 감소 및 유통환경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다. 따라서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, 기술력 등을 확보하고 골목 슈퍼마켓,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·운영

나. 운영개요

- 위치 :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(양곡도매시장 내)
- 센터규모 : 3,372㎡(리모델링 2,300㎡, 증축 1,072㎡)
- 사업내용 : 상품의 보관·배송·포장 등 공동물류, 공동도매 사업
- 개 장 일 : '13. 2. 7.(운영개시 '13. 3. 4.)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(2021.01.01.~2023.12.31.)

다. 추진경위

- 강남권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 착공('11.9월), 준공('12.3월)
- 강남권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계획 수립('12.4.6.)
- 중소유통 물류센터 개장('13.2.7.)
- 민간위탁 협약 및 운영

구 분	민 간 위 탁 단 체	대 표 자	민간위탁 기간 (협약체결일)	비 고
제1차	서울지역 수퍼협동조합협회	김 일 규	'12.09.24.~'15.12.31. (12.09.21.)	
제2차	서울남북부 수퍼마켓협동조합	김 일 규	'16.01.01.~'17.12.31. (15.12.21.)	
제3차	서울중동부 수퍼마켓협동조합	황 의 한	'18.01.01.~'20.12.31. (17.12.14.)	

- 물류센터 공급대상 및 품목확대 등 운영활성화 대책 추진 중('19.3월)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2의 법 목적, 취지상 중소유통업자 단체에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
 - ▶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중소유통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류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경우 지원
- 특히,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(단체)에서 운영할 경우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

마. 위탁사무내용

- 유통·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·가공·제공
- 상품의 보관·배송·포장 등 공동 물류사업
- 상품의 기획·개발 및 공동구매, 상품의 전시 및 판매
- 물류센터 이용 중소기업사업의 서비스능력 향상
- 그 외 물류센터 관리·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인정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【유통산업발전법】
제17조의2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(이하 이 조에서 "중소유통기업자단체"라 한다)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(이하 "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"라 한다)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~
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~

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~

※ 물류센터 현장 위치도

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수익형 위탁사업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 김현창(☎2133-5557)